

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

전문개정 2006년 7월 31일 조례 제 884호
개정 2007년 10월 5일 조례 제 938호
개정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 949호
(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
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
정비에 관한 조례)
전부개정 2016년 4월 18일 조례 제1472호
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17년 9월 26일 조례 제1622호
일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조례 제197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, 제54조, 제56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 1. 13>

제2조(회의일수) 오산시의회의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10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9. 26>

제3조(회기)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 등 서로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9. 26, 2022. 1. 13>

1.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, 그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.
2.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

제4조(집회)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. <개정 2017. 9. 26>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·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.

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22. 1. 13>

제5조(심의안건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지난 연도 결산을 승

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

인하고,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시정연설 청취 및 예산안을 의결하고,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④ 그 밖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칙 <2016. 4. 18 조례 제1472호 전부개정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9. 26 조례 제162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1. 13 조례 제1978호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